

STRATEGY 21

통권36호 Vol.18, No.1, Spring 2015

다산 정약용의 표류민과 해상국경에 대한 인식

신 재 훈*

I. 머리말

II. 조선 후기 해방정책의 변화상과 표류민 문제의 심화

1. 조선 시대 해방정책의 특징과 폐해
2. 조선 후기 황당선의 출현과 표류민 문제의 심화

III. 다산 정약용의 표류민 인식과 해상국경 인식

1. 19세기 동아시아 표류민의 증가와 정약용의 표류민 인식
2. 「해방고」의 사례를 통해 본 정약용의 해상 영역 인식
3. 「강계고」를 통해 본 정약용의 국경 설정에 대한 인식

IV. 맺음말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실 연구원, 이 논문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 주최한 제5회 해양학술논문공모전 장려상을 수상한 논문임.

I. 머리말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학자인 정약용은 다방면의 저술을 통해 실학의 집대성자라고 일컬어진다. 그 중 『사대고례』는 정약용의 외교적 관심도를 보여주는 저서이다.¹⁾ 『사대고례』는 정약용이 정조의 명을 받아 기획한 것으로 조선 후기의 외교서인 『통문관지』와 『동문회고』가 항목이 많고 나열되어 있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실무 지침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²⁾ 그러나 정조의 갑작스런 홍서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1821년에야 정약용과 그 제자인 이청에 의해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된다.³⁾

『사대고례』에 대한 연구는 최근 정약용의 저서로 확정된 후 이 책의 전반적인 체제를 정리한 논문⁴⁾과 일부분인 「해방고」를 분석해 표류민과 표류선의 처리 사례를 정리한 논문이 나오기도 했다.⁵⁾ 반면 19세기 조선의 해양 인식과 표류민에 대한 연구는 조청 간의 국경 문제⁶⁾, 실학자들의 국경 인식⁷⁾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조선과 청, 동아시아의 표류인과 외교적 절차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⁸⁾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정약용의 「해방고」 저술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으

-
- 1) 사역원 정인 이시승의 저술로 알려져 왔으나 정약용의 「사대고례제서」를 통해 정약용과 이청의 공동저술인 것으로 수용되고 있다.
 - 2) 임형택, 2008, 「『사대고례』와 정약용의 대청관계 인식」, 『다산학』 12.
 - 3) 정 민, 2009, 「다산의 「해방고」에 나타난 중국 漂船 처리 문제」, 『한국학논집』45, 158쪽.
 - 4) 임형택, 위의 논문.
 - 5) 정 민, 위의 논문.
 - 6) 배우성, 1998, 『조선 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이화자, 2008, 『조청 국경문제연구』, 집문당.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 7) 배우성, 1997, 「17·18세기 청에 대한 인식과 북방영토의식의 변화」, 『한국사연구』99·100.
배우성, 1999, 「정조시대 동아시아 인식의 새로운 경향」, 『한국학보』94.
김문식, 2003 「실학과 동아시아 자본주의,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한국실학연구』8.
배우성, 2005, 「박지원이 파악한 18세기 동아시아정세」, 『한국실학연구』.
강석화, 2012, 「成海應의 西北 邊界 意識」, 『진단학보』115.
 - 8) 정 민, 2008,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 『한국한문학회연구』43.
최성환, 2011, 「19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경험과 그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13-1.
민덕기, 2010,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 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연구』42.
신명호, 2006, 「조선후기 해양인식과 표류인 정책」, 『해양문화학』2.
김정옥, 2012, 「18~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 표도민들의 추이」, 『조선시대사학보』44.
원종민, 2008,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중국학연구』44.
유서풍, 2009, 「근세동아해역의 위장표류사건」, 『한국학논집』45.

로 접근하지 못한 한계가 있거나 관심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방고」의 사례를 역사적 배경과 결합시켜 「해방고」의 사례를 통해서 19세기 무렵 조선의 표류민 문제 해결과 대비책 등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정약용의 해상 국경 인식도 알아보려고 한다. 선행 연구를 활용해 19세기 조선의 해양 인식과 표류민 정책 등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정약용의 표류민 정책, 해양 국경 인식에 대해 살피기 위해 『사대고례』, 「해방고」를 적극 활용해 볼 것이다.

특히 19세기 조선의 바다를 바라보는 정약용의 해양 인식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형편이다. 정약용은 그의 저술 특성상 참고문헌의 사례를 발췌한 후에 자신의 견해인 “신근안(臣謹案)”을 수록함으로써 그 생각을 드러냈는데 「해방고」에서도 이를 잘 살펴보면 19세기 조선의 기본적인 해양 정책의 일면과 정약용의 해양 인식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방고」의 서문에서 정약용은 중국과 조선의 해역과 경계에 대해 역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해양정책에 있어 조선과 청의 갈등의 소지를 정약용이 이미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⁹⁾ 따라서 그의 「해방고」 사례의 추출과 편집에는 점차 치열해지는 해양에서의 조청간 경계의 갈등이 전제되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정약용은 「해방고」의 체제를 해금엄속(海禁嚴束), 해도방수(海島防守), 아인표해(我人漂海), 피인표해(彼人漂海), 피표압부(彼漂押付), 제국인표해(諸國人漂海)의 순서로 구성하여 당시 큰 문제가 되었던 해금 정책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에서의 경계가 중요하다는 자신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체제는 기본적으로 표류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¹⁰⁾ 다만 표류민과 표류선에 대한 관심은 정약용이 활동한 정조 대에서 순조 대에 발생한 황당선과 이양선의 출몰 등으로 인한 외교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정조와 순조 대의 해방에 대한 입장은 점차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정약용 역시 「해방고」 저술을 통해 해양에서의 경계 인식에 있어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정약용의 해방 인식과 그의 외교적 식견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길 기대해 본다.

9) 『사대고례』, 「해방고」서

“...蓋我豐川長湍等地 與山東相直 康津海南等地 與淮南相直 緯度既同 壤地相近 乖迕則侵伐互及 和睦則漂轉得恤 總係海防事情 今集次爲海防考”.

10)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표선문정(漂船問情)’ 5조목을 따로 남겨 표류선에 대한 조치사항인 문정(問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약용, 『목민심서』, 제3권, 「왕역봉공(往役奉公)」).

Ⅱ. 조선 후기 해방정책의 변화상과 표류민 문제의 심화

1. 조선 시대 해방정책의 특징과 폐해

정약용이 살았던 18~19세기는 존명배척 사상이 점차 퇴색하고 북학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국경과 바다를 통한 조선과 청의 왕래가 점차 활발해지는 시기였다. 그러면서 점차 바다를 사이에 둔 양국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18세기 초반에는 조선의 소중화의식과 청이 멀지 않은 장래에 쇠퇴할 것이라는 명분론적 전망인 영고탑(寧古塔) 회귀설¹¹⁾이 제기되는 한편 청의 해금정책이 완화되고 서구의 이양선 등이 표류하여 바다에서의 긴장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¹²⁾ 이에 영조는 황해도와 함경도의 방어체제는 물론이고 황해도 연안 지역과 서해안 연안, 도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해방정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¹³⁾

그러나 조선은 15세기 이후부터 해안가와 도서(島嶼)지역에 대한 소극적인 해방 정책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삼았기 때문에 19세기까지도 소극적인 해방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조선의 해금정책의 실상을 살펴보고 그로 인해 생겨난 표류민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정책과 도서 지역의 인식 변화상을 알아 볼 것이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중국과는 조공체제를 통해 사대를 표방하고, 유구·왜·여진 등과 교린관계를 지향하였다. 때문에 조선의 외교정책은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1371년부터 200여 년간 실시된 명의 해금정책은 조선의 해방정책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다.¹⁴⁾ 실제 조선은 건국 초부터 『대명률』을 차용해 사적인 출해(出海)와 무역을 강하게 통제하는 명의 해금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또 『대명률』에 보이는 문인(文引)제도를 수용하여 나루터와 관문을 사적으로 도강(渡江)하거나 도해(渡海)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¹⁵⁾ 여기에

11) 『숙종실록』, 숙종 16년(1690년) 1월 3일.

“古人有言，有備無患，居安思危 此皆格言也，近聞太極鎚子，兵勢甚盛，不出數年，中原必大亂云，彼若見逐，則必歸寧古塔 既歸寧古塔，則咸關以北，非我所有 豈非大可憂乎 迨此閑暇，陰雨之備，不可不熟講矣 大運、來善等，猝承上教，茫然不知所對 但曰 自上軫念陰雨之備，此誠無疆之福也”

12) 배우성, 1997, 「조선후기 연해·도서지역에 대한 국가의 인식 변화」, 『도서문화』15, 6쪽.

13) 원유한, 2000, 「조선후기 대청관계 및 인식의 변화」, 『아세아문화연구』4, 6쪽.

14) 민덕기, 2011, 「중·근세 동아시아의 해금정책과 경계인식」, 『한일관계사연구』39, 116쪽.

세종 대 이후로 이어진 대마도 등지에서의 내항 일본인 급증과 그로 인한 접대 증가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조선의 해금정책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¹⁶⁾ 도서지역에 대한 조선의 이주정책 역시 조선초기부터 시행되어 이는 공도(空島) 현상과 같은 조선의 소극적인 해금정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¹⁷⁾ 그 결과 조선은 소극적인 해방정책을 고수하였고 이는 바다 진출에 대한 소극적 인식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해방제도에서 국경의 군사적 방어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졌고 주민의 월경과 외양으로의 이동을 막는 것이 조선의 해방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수종(水宗)이라는 매우 불명확한 경계를 정해놓고 선박과 어민의 이탈을 항상 감시하여 바다의 진출과 해상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쳤다.¹⁸⁾ 이른바 조선의 해금정책은 명의 해금정책보다도 더 엄격하고 예방 차원의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 즉 조선은 자국민의 수종 이탈과 외해(外海 혹은 外洋)에서의 표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이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¹⁹⁾ 이것은 관문을 넘어서면 처벌하는 관금(關禁) 조항과 일맥상통하며 특정 정책이 아닌 법 조항이란 점에서 그 강제력이 큰 것이었다. 때문에 조선의 어업과 해양 상업, 수군의 작전 활동은 철저히 외양 안쪽으로 제한되었다.²⁰⁾

실제 조선 후기의 법령집인 『만기요람』과 『속대전』에는 해안가에 거주하는 백성은 물론이고 군대에 대해서도 외양으로의 진출을 엄히 금했다. 『만기요람』에서는 “우리나라의 해금은 매우 엄하여 바닷가에 거주하는 백성을 외양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²¹⁾ 그리고 『속대전』에는 “전선과 병선도 작전을 위해서라도 외양으로 내보낼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기고 100리 밖의 공해상으로 배를 내보냈을 때 1백대의 곤장을 때리고 충군시킨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얼마나 엄한 규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²²⁾ 또 “몰래 전선을 풀어놓아서 전선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사형으로 처벌한다”는 강력한 처

15) 민덕기, 위의 논문, 116쪽.

16) 민덕기, 위의 논문, 120쪽.

17) 민덕기, 위의 논문, 123쪽.

18) 한임선·신명호, 2009, 「조선 후기 해양경계와 해금」, 『동북아문화연구』21, 6~7쪽.

19) 한임선·신명호, 위의 논문, 13~14쪽.

20) 한임선·신명호, 위의 논문, 6~7쪽.

21) 『만기요람』, 군정편, 해방(海防), 속해(東海)

“弊邦海禁至嚴 制東海民 使不得出於外洋”.

22) 『속대전』, 병전, 병선(兵船)

“戰兵船 毋得出送外洋 犯者 依縱放軍人出百里外空歇軍役律 杖一百 充軍”.

별도 명시하였다.²³⁾ 특히 “자국민의 속박을 법령의 갑으로 삼는다”²⁴⁾는 『전각사일기』의 내용은 조선의 해방 정책이 조선의 자국민 도주 방비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해금정책은 해상에서의 무역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서 나아가 자국민의 월경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었다.

이처럼 조선의 강력한 해금정책은 자국민의 이주를 방지하기 위한 성격이 짙었던만큼 자국의 표류민 송환에 대한 강한 의지도 시사하는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타국의 표류민 송환에 대해서도 조선 정부는 원칙적으로 송환을 기본 입장으로 취하였다. 1764년 발생한 일본의 사츠마 선박의 거제도 표류 사건에서도 해당지역의 변장(邊將)부터 이웃 지역의 변장, 동래부사, 수사, 통제사를 거쳐 국왕에게까지 표류가 보고되게 할 정도로 송환절차는 복잡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사츠마의 배와 표류 선원들은 동래왜관으로 이동한 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²⁵⁾

중국의 표류선과 표류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대고례』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지방관은 해당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은 문정(問情) 후에 배의 상태를 살펴 온전치 않을 경우 서울로 표류민을 호송한 후 표류인을 원적지로 돌려보내는 방식을 취하였다.²⁶⁾ 또 『만기요람』에서는 비변사의 「소장사목」 가운데 표도민 항목을 두어 표류민 송환절차를 “중국인이 육로로 돌아가는 자는 내지인인면 자관(咨官)을 청해 데려가고 외지인인면 의주부의 역학이 봉성으로 넘겨준다”²⁷⁾고 기록하여 표류민 송환에 대한 상세한 원칙을 세워놓은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표류인에 대한 원칙적 송환정책은 엄격한 체제와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인 도서지역 어민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목민심서』에서도 정약용은 표류인들에 대한 조사와 복잡한 송환절차는 해당 지역의 백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적었다.

23) 『속대전』, 병전, 병선(兵船)

“潛放戰船漂失者 以一律論”.

24) 한임선·신명호, 앞의 논문, 6쪽, 재인용. (『전각사일기』, 영조 33년 9월 18일)

“漁商船勿出外洋 自是令甲”.

25) 신명호, 2006, 「조선후기 해양인식과 표류민 정책」, 『해양문화학』2, 11~12쪽.

26)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63쪽)

“凡漂人押送之法 具有成例 載於館志 館志云 上國人漂泊我國界 地方官爲先館接 馳報于該營... 發遣譯學問情 船完而願從水路者 俟風發回 若船破從陸者... 留接數日 差咨官分內外 地 押解轉送原籍地方”.

27) 『만기요람』, 「재용」5, 중강개시(中江開市)

“義州則開城府及兩西監營分定農牛, 鹽, 紙等項於各邑 另差別將 聚待灣上 及其期日 差使員同譯學訓導領往中江 與鳳城通官章京 定價相換 而私販人及牝馬 人蔘等一切禁物 府尹勾管嚴察”.

섬사람들은 본래 호소할 길 없는 사람들인데 조사하는 일에 따라간 아전들이 조사관의 접대를 빙자하고 침탈을 마음대로 하여 술·항아리 등까지 남기지 않는다. 표류선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몇 개의 섬이 모두 망하기 때문에 표류선이 도착하면 섬사람들은 반드시 칼을 빼어들고 활을 겨누어서 그들을 죽일 기색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한다.”²⁸⁾

이처럼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문정을 위해 파견된 관리들을 접대하고 표류민의 숙박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섬의 거주민들이 표류민을 적대시하게 된 것이다. 또 정약용은 “표선(漂船)을 접응(接應)하기 위하여는 본래 섬사람들에게서 훑어냈는데, 민고에서 거둬 빼내가는 것은 사리가 아니다.”²⁹⁾라고 하여 표류민에 대한 비용 문제가 도서지역의 문제에서 점차 내지로 옮겨와 사회문제가 되었음을 시사하였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점차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자취를 감추게 되면서 문제가 내지로 옮겨 왔기 때문일 것이다.

2. 조선 후기 황당선의 출현과 표류민 문제의 심화

17~18세기에 들어 청과 조선의 외교적 관계는 역시 조공관계로 다시 귀착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여전히 청을 명의 계승자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청은 조선의 이러한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였다. 따라서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양국의 외교문제에 있어 갈등을 부채질할 수 있는 소지를 지닌 것이었다. 특히 17세기 청의 증원장악에 저항하여 일어난 정성공의 무리가 타이완에서 멸망하면서 서해상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무리들의 불법적인 해상 범윙과 표류 사건이 발생해 골치를 썩게 되었다.

실제로 정성공 세력이 타이완에서 멸망당하고 해금정책이 풀린 1683년을 전후한 시점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청인의 조선 해역 범윙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범윙 세력 중 대부분은 어업과 상업을 위해 해역을 넘어 오다가

28) 정약용, 『목민심서』, 「봉공육조」, 왕역봉공(往役奉公)

“...島民本皆無告 吏隸從行者 憑藉接待 恣行剽劫 錡釜鉶罌 悉無殘餘 一經漂船 數島必亡 故漂船到 泊 島民必拔劍關弓 示以殺害之色 使之遁去...”

29) 정약용, 『목민심서』, 「호전육조」2, 평부

“漂船問情 機急而行艱 勿庸遲滯 爭時刻以赴”

표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중에는 멸망한 정성공의 잔존세력도 있었다. 따라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을 골칫거리로 여겨 송환절차를 밟게 하여 돌려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1682년 서해안의 추도(楸島) 해역에 나타난 정성공의 아들 정경(鄭經)에 소속된 황당선이 10여일간 정박한 사건이다. 그런데 당시 첨사 장후량은 이를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고³⁰⁾ 이로 인해 조선 정부는 혼란상태에 빠졌다. 당시 청은 오삼계의 삼번의 난을 겪으면서 대만의 정성공 무리와 이들이 연계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조선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에 정성공의 아들인 정경의 부하로 추정되는 무리들이 추도에 정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선 정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보고를 누락한 장후량은 참수하고 김석주 등의 대신들은 이 사건을 모른 척 하자고 할 정도로 국제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했다.³¹⁾

1700년 이후에도 조선의 서해안에는 더욱 큰 규모의 중국인이 출몰했다. 규모는 수백 척을 헤아릴 정도로 커졌고 그 인원도 수백 명에 달했다. 이들의 서해안 출몰은 표류나 무역보다 고기잡이와 약탈이 목적이었다. 즉 이들은 표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선의 서해안에 위치한 작은 섬에 침입, 정박한 후 촌락을 약탈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³²⁾ 이에 따라 조선은 이들의 무단 침입 행위를 청 조정에 항의했고 청 조정은 무단 침입자를 처벌하겠다고 회신한 후 청의 예부를 통해 표류선박 및 표류민의 성명, 본적 등을 조사하여 이들을 원적지로 돌려보내고 죄를 다스리는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³³⁾ 따라서 청의 어선과 어민의 범월은 실질적으로 자국의 적극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 또 불법적인 조업을 하다가 조선의 변장에게 적발되면 표류했다고 핑계를 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정약용은 「해방고」에서 표류민의 송환절차 사례를 자세히 밝힘으로써 당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표류문제에 대한 적절한 송환절차의 예시를 보인 것이다.

조선과 청의 사이에 놓인 바다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자 소극적인 해금정책으로 무인지경이 되어버린 조선의 도서지역에는 청나라 사람과 타국

30) 『숙종실록』, 숙종 8년(1682) 6월 16일.

31) 민덕기, 2010,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 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연구』42, 213쪽 참조.

32) 민덕기, 위의 논문, 214쪽.

33) 민덕기, 2010, 앞의 논문, 212쪽.

인의 불법적인 침입과 어업활동이 잦아지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표류를 핑계로 하면서 어업활동, 혹은 본국에서의 도주를 일삼았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 조정에서는 무단 침입 및 어업활동,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방어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18세기 초엽까지 강력한 해금정책을 내세웠던 조선의 해방 정책은 정조 대에 들어 다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³⁴⁾ 그 중 하나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산(離散)을 방지하고 내지인을 이주시키는 대책이었다. 17세기 남구만으로부터 제안된 변경지역과 도서 지역의 개발론이 해양에서의 무단 범월과 어업활동을 막기 위해 100여년 만에 다시 제기된 것이다.³⁵⁾ 도서지역 개발론은 본래 17세기의 영고탑 회귀론과 같은 청의 국경지대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때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18세기에 청의 중원 장악이 확실해지고 17세기 말부터 청과 조선의 범월 사건이 잇따르면서 위기감을 느낀 조선이 다시 제시한 것이다.³⁶⁾ 그 결과 1712년에 목극등 일행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조선과 청의 국경을 확실히 하기도 한 것이다.³⁷⁾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도서지역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지게 되자 조선 정부는 내지인의 도서지역 인구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서지역 개발정책을 추진했다.³⁸⁾

장연(長淵)의 대청도(大靑島)와 소청도(小靑島)에 백성들을 모집하여 농사짓고 살게 하도록 허락하였다.³⁹⁾

특히 황당선이 출몰한 1793년(정조 17)에 황해도의 대청도와 소청도 지역의 개간이 이루어지고 도서지역에 읍치를 두자는 해도설읍론(海島設邑論)이 제기된 것은 변화된 해금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⁴⁰⁾

이후 정약용이 『사대고례』를 집필하는 시점에서 조선의 도서지역, 특히 청과 조선의 경계에 속한 섬에는 청인의 출몰이 더욱 잦아졌다. 18세기 이후에 중국인의 어업행위와 무단 해역 범월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선왕조

34) 배우성, 1998, 『조선 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10쪽 참고.

35) 『숙종실록』, 숙종 9년(1683년) 4월 3일; 『숙종실록』, 숙종 11년(1685년) 11월 13일.

36)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41쪽.

37) 강석화, 위의 책, 55~56쪽 참조.

38) 배우성, 1998, 「조선 후기 변지관의 변화와 지역민 인식」, 『역사학보』160, 32쪽.

39) 『정조실록』, 정조 17년(1793년) 4월 29일

“許長淵大小靑島募民耕居”.

40) 배우성, 1998, 앞의 논문, 35쪽.

실록』에 나타나는 중국인의 표류 건수만 해도 무려 109건에 이르며 표류인의 수는 3,170명에 이른다. 『통문관지』에 나타난 조선후기 중국인의 표류 건은 241건, 표류인의 수는 5,075명에 이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드러낸다.⁴¹⁾ 『통문관지』는 숙종 대 이후 지어진 책이므로 조선후기에 이룰수록 표류 건과 표류인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집계된 표류의 건수와 표류민의 숫자만 보아도 표류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역을 범월해 상업과 어업에 종사한 중국인의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조와 정약용은 표류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외교서인 『사대고례』에 표류 사례를 넣고 그에 대한 경계의식을 포함시키려고 했을 것이다. 표류에 대한 외교적 절차의 필요성이 증대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인의 조선 해역의 무단 범월과 표류는 정치·외교적으로도 부담스런 문제였지만 비용상으로도 달갑지 않은 문제였다. 특히 정조와 순조대에 일어난 남방계 중국인 상인집단의 대규모 표류는 조선정부에게 엄청난 인적, 물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⁴²⁾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표류로 인한 조청 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약용은 『사대고례』에 표류에 관한 조항을 넣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약용이 또 하나 「해방고」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은 표류민의 증가가 근본적으로 해상 범월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각이었다. 다음 장에서는 정약용의 해방, 즉 해상 국경 인식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Ⅲ. 다산 정약용의 표류민 인식과 해상 국경 인식

1. 19세기 동아시아 표류민의 증가와 정약용의 표류민 인식

18세기에 편찬된 『통문관지』의 기록에 의하면 1710년부터 1884년까지 175년 동안 172건이 발생하여 1년에 1건 꼴로 발생했다. 이는 조선이 출해와 원양의 진출을 엄격하게 금하는 해방정책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표류의

41) 원종민, 2008,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중국학연구』44, 234~235쪽.

42) 원종민, 앞의 논문, 237쪽.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유구(琉球)의 표류 건수가 광서 연간(1875~1898)에 무려 100건, 일본의 표류건수는 1,000여 건이 넘는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표류민 발생은 국제적 문제가 된 것이다. 청의 해금정책이 풀리고 난 후 동아시아의 표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특히 19세기는 동아시아의 폐쇄적인 해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표류건수가 발생할 정도로 적극적인 해상 무역 및 해운의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였다. 더불어 서양 상인들의 필리핀과 마카오 지역을 통한 해상 무역의 성행은 표류선과 표류민의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 「해방고」의 ‘제국인표해(諸國人漂海)’는 이러한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저술된 항목으로 조선으로 표류한 중국인 외의 기타 외국인을 중국을 통해 송환한 사례를 소개한 항목이다.⁴⁴⁾

이 항목에서 정약용은 1801년 마카오에서 표류한 외국인 사례를 소개해 적대적인 표류민 정책의 폐해를 비판했다. 전술한 ‘표선문정 5조’에서도 정약용은 표류하는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접대를 주장했다.⁴⁵⁾ 정약용은 기본적으로 북학을 수용하는 시대의 학자였고 청의 고증학에 경도된 영향으로 평소 외국 문물의 적극적 수용 의지를 보인 것이라 풀이된다.

동아시아 각국의 표류민 정책을 살펴 본 「해방고」의 ‘아인표해(我人漂海)’ 조 사례에는 흥어잡이 문순득의 표류 사례를 실었다. 문순득의 표류담은 조선에서 유구, 여송(필리핀), 청을 거쳐 조선으로 송환된 기록으로 동아시아의 표류민 정책을 두루 알아보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과 인접한 유구와 청의 표류민 송환 절차를 잘 살펴볼 수 있다.

이 사례에 등장하는 문순득은 본래 신안군 우이도(牛耳島)에 살았던 흥어 상인이었다. 그는 1802년 대흑산도 인근에서 표류하고 현재의 오키나와·필리핀·마카오를 거쳐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의 표류담은 흑산도에 유배 중이던 정약전의 기록인 『표해시말』에 소개되어 있다. 때문에 이 표류담은 정약전의 동생인 정약용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⁴⁶⁾ 그로 인해 정약용은 문순득의 표류담을 『사대고례』, 「해방고」에 편입시켰고 『경세유표』에서 문순득

43) 유서풍, 앞의 논문, 129쪽. 유구 지역에 표류한 사례까지 합치면 189건이며 배를 수리하지 않고 바로 돌려보낸 경우를 합치면(『통문관지』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를 합치면) 201건이다.

44) 정민, 2008,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 『한국한문학연구』43, 90쪽.

45) 정약용, 『목민심서』, 제3권, 「왕역봉공(往役奉公)」

...異國之人 禮當相敬 吾人每見彼人剃髮夾袖 心懷慢侮 接待問答 動失體貌 將使佻薄之名 達于天下 此一戒也 恪恭忠信 如見大賓可也...

46) 최성환, 2011, 「19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경험과 그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13-1, 271쪽.

의 표류담을 인용해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정약용은 동아시아의 표류민 송환절차에 대한 정보와 표류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을 것이다.

문순득의 경험에 따르면 유구의 표류민 송환절차는 유구의 대도(大島) → 나패 → 중국으로 이동하는 송환절차를 밟았다. 당시에 문순득은 표류 11일 만에 유구의 대도 봉행소 근처에 머물다가 수도인 나패로 이동한 후 중국으로 이동했다고 한다.⁴⁷⁾ 유구의 나패는 국제적 항해가 허용된 유일한 곳이었고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항구는 백촌항 뿐이었기에 이 순서대로 이동했을 것이다.⁴⁸⁾ 유구의 표류민 송환은 보통 이처럼 3단계의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유구 정부는 표류민을 인근 지역에 안치한 후 잘 보살피다가 수도인 나패의 백촌항으로 이동시켜 출항을 준비하는 문정의 절차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중국으로 진공선·호송선에 표류민을 태워 출항시켰다. 표류민을 진공선과 호송선에 태우는 것은 표류민에 대한 우대라기보다는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좋은 명분이란 점에서 유구의 무역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⁴⁹⁾ 청은 표류민 송환 선박에 면세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구의 표류민 송환은 매우 적극적이면서 우호적인 성향을 지닌 것이었다.

이어서 필리핀의 루손 섬과 마카오를 경유하여 청으로 송환된 문순득은 청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다. 여기서 19세기 청의 표류민 송환정책도 살펴 볼 수 있다. 청 정부는 표류민에 대해 일체의 경비와 식량, 생필품을 지급하고 돌봐 주다가 조선의 사신과 함께 돌려보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문순득의 사례 역시 이에 준하여 처리되어서 문순득은 북경으로 호송된 후 그간의 상황을 심문받은 후 회동관에 머무르며 사신이 오길 기다린 후에 사신의 귀국길을 따라 왔다.⁵⁰⁾ 실제 청은 표류민 송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조선의 사신이 오게 되면 함께 돌려보내는 방식을 이미 18세기부터 취하고 있었다. 이 절차는 점차 매뉴얼화되어 자리잡고 있음을 「해방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동아시아의 표류민 송환절차는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진 상태였고 대체로 우호적인 표류민 인도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정약용이 ‘표선문정 5조’에서 밝힌 조선의 표류민 인도 및 송환 절차는 이에 비해 매우 후진적이었다. 조선에서는 표류민이 발생하면 문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표류

47) 최성환, 2009, 앞의 논문, 17쪽.

48) 최성환, 2009, 앞의 논문, 18쪽.

49) 최성환, 2009, 앞의 논문, 27쪽.

50) 최성환, 2009, 앞의 논문, 36쪽.

선 안에 있는 문자는 인쇄본이거나 사본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초록하여 보고해야 했다. 그래서 많은 서적을 실은 배가 표류하게 되면 주민들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또 표류민이 상륙한 섬의 주민들은 문정 과정에서 관원의 착복이 두려워 표류민을 외면하고 표류선을 불태워 버리는 등 표류민에 대해 비인도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그 결과 조선은 표류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선진문물과 서적의 유입, 발달한 선박 기술 등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고 정약용은 한탄했다.⁵¹⁾ 따라서 정약용은 조선에서도 표류민에 대한 우호적인 송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대고례』, 「해방고」에도 정약용의 이러한 의도가 드러나 있다. 「해방고」에는 조선인이 중국에 표류했다가 송환된 아인표해(我人漂海), 중국인이 조선에 표류했다가 송환된 피인표해(彼人漂海), 중국 표류민을 압송하여 본국으로 회송하는 기준과 처리에 관한 사례인 피표압부(彼漂押付), 조선으로 표류한 기타 외국인을 송환한 제국인표해(諸國人漂海) 등의 내용이 실려 있다. 이 내용은 책의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⁵²⁾

그 중 「해방고」의 아인표해는 조선인이 중국에 표류했다가 양국 절차에 따라 송환된 9건의 사례를 다루면서 청의 표류민 송환에 대한 절차를 보여주고 있어 문순득의 표류담과 비교할 수 있다. 정약용은 기본적으로 17~18세기의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점차 청의 조선인 표류민에 대한 우호적인 송환절차가 정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발생시기	표류인원	송환과정	비고
1647년	김사복 등 7	청 내지→북경→송환	북경 조사 후 송환.
1705년	남12, 여 6	유구→청 복건성→북경→사은사 동행	사신단 동행 송환.
1713년	고도필 등 7	강녕태주→북경→의주→사신단 동행	사신단 동행 송환.
1737년	미상	표류지→북경→산해관→의주→사신단 동행	부대비용 청 부담.

51) 정약용, 『목민심서』, 제3권, 「왕역봉공(往役奉公)」

... 一, 國法, 凡漂船中所有文字, 毋論印本寫本, 盡行鈔報...將欲鈔報, 如精衛填海, 如有刪拔, 必城火及池, 遂掘沙場, 以累萬卷書, 埋之沙中, 漂人大痛, 亦復奈何,

... 一, 問情必在海島, 島民本皆無告, 吏隸從行者, 憑藉接待, 恣行剽劫, 鎗釜餅罌, 悉無殘餘, 一經漂船, 數島必亡, 故漂船到泊, 島民必拔劍關弓, 示以殺害之色, 使之遁去, 又或風急石惡, 禍迫呼吸者, 哀號乞救, 而島民窺而不出, 任其覆沒, 既沒既死, 四隣密議, 焚船燒貨, 以滅其跡,

... 一, 見善而遷, 小事皆然, 今海外諸國, 其船制奇妙, 利於行水...有志之士, 既差是役, 宜以此爲心...

52) 정민, 앞의 논문, 158~159쪽.

1647년(인조 24)에 발생한 표류민은 사은사로 파견되었던 김사복(金沙卜) 등 7명으로 북경에서 조사 후 다시 송환된 사례이고⁵³⁾ 1705년에 발생한 표류는 남자 12명, 여자 6명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유구에 도착 후 청의 복건성을 거쳐 북경, 조선으로 돌아온 사례이다.⁵⁴⁾ 이 때 동평군 이항(李杭)이 사은사로 북경에 파견되어 이들과 함께 송환되었다.⁵⁵⁾

또 1713년에는 조선인 고도필(高道弼) 등 7명이 강녕태주(江寧泰州)에 표류하여 북경에서 조사를 한 후 사신들이 도착하자 의주를 통해 돌려보낸 사례였다. 청의 예부에서는 1705년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조선국의 사신이 올 것을 기다려 돌려보냈는데⁵⁶⁾ 이를 통해 조선의 사신이 표류인을 만나 의주를 통해 함께 돌아가는 방식이 조선과 청 사이에 표류인 송환 매뉴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37년의 사례에서는 문순득에게 그랬듯이 청이 표류민을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조선인의 배가 부서져서 해로를 통해 돌아갈 수 없으므로 산해관을 경유해 가도록 하는데 그 비용과 곡식까지 지급해 준 사례였다.⁵⁷⁾

이처럼 정약용은 각종 사례를 통해 자국의 표류인 송환 처리 사례를 통해 청의 표류인 송환절차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표류인에 대한 국제적 송환절차를 살펴보고 그 사례들을 통해 외교적 매뉴얼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17세기 말부터 조선과 청의 바다에는 많은 표류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송환절차를 실행할 때 참고할 사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과 조선의 경계는 점차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 되는 시기였기에 더욱 필요했다.⁵⁸⁾

그러나 한편으로 표류인의 문제는 우호적이고 인도적인 외교적 송환절차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조선의 해방정책

53)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27쪽)
“本國人金沙卜等 七名漂到上國地方 皇上定許放還”.

54)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28쪽)
“男人十二名 女人六口 飄至琉球國 該國王送到福建該撫解送至京”.

55)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28쪽)
“東平君 李杭等 貴領謝恩表文禮物赴京”.

56)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29~30쪽)
“我漂民特令差官付於義州...朝鮮國 廣州人 高道弼等 七名漂到江寧泰州 解送到京查...京俟朝鮮國 凡事差來使臣交與帶回等 因在案今高道弼等 亦照...”.

57)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32쪽)
“今朝鮮人船隻業已損壞 不便由海歸國由府尹衙門動用山海關 餘剩銀兩從優資級衣糧 派委官兵持本部咨文送至鳳凰城轉送...”.

58) 배우성, 1997, 앞의 논문, 26쪽.

은 자국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타국의 불법적인 범월을 막는데 주력하는 방향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조선의 백령도(白翎島)에서 청인이 해삼을 채취하다가 안흥진에 표류하게 된 사건, 순조 초년에 여러 번에 걸쳐 발생한 장자도 사건에 연루된 실제 표류인, 혹은 표류를 빙자한 이들의 처리 문제 역시 살피고 있다. 이는 해상 범월에 대한 경계와 국경 인식이 수반된 것으로 기본적인 해방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약용이 표류민의 문제 역시 해상 범월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2. 「해방고」의 사례를 통해 본 정약용의 해상 영역 인식

『사대고례』의 「해방고」는 표류민의 사례를 다룬 조항 이전에 실린 해금엄속(海禁嚴束), 해도방수(海島防守)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조선과 청 사이에 해금(海禁)이나 표해(漂海)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여섯 경우를 사례별로 나눠 살핀 것이다. 표류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해금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은 조선의 해금정책의 실상과 무단 해양 범월 사례를 먼저 살핀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해금엄속(海禁嚴束)은 중국 선박이 통상을 위해 해금을 어기고 바다를 건너온 것을 단속한 사례와 조선과 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포함시켰다. 사례 중 1647년(인조 24)에 발생한 청의 천진병항사(天津兵餉司)의 차인(差人) 매수(買秀) 등이 같이도(葛伊島)에 정박한 사건이 나온다. 이들은 표류를 핑계대고 청국의 허가를 얻었다고 조선 정부를 기만하기까지 하였다. 대표적인 중국 상선의 표류를 빙자한 해금 위반 사례라 할 수 있다.⁵⁹⁾

반면 2년 후에 일어난 서승(徐勝) 등의 사건은 분쟁적 성격이 짙다. 섬라국(暹羅國) 동쪽에서 무역하기 위해 배를 돌리다가 우연히 홍모적(紅毛賊: 서양인 해적)을 만나 조선의 가배량(현재의 통영 지역)에 표류한 복건인 서승 등의 무리는 만호 경성익(景星翼) 등에 의해 살해당했다.⁶⁰⁾ 이 사건은 『조선왕조실

59)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6쪽)

“文獻備考仁祖二十四年 天津兵餉司差人 買秀等來泊宣川葛伊島 請耀票文內無許往朝鮮語 但口稱許赴遼旅 乃開路朝鮮之意 朝廷以今雖諭送 後弊難保請申嚴海禁之意 具咨戶部”.

60)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7~8쪽).

록』에서는 중국의 배가 통영 지역을 지나가는데 조선의 배를 보고 남만의 흥모적으로 오인하고 교전을 벌였다가 조선의 수군이 그들을 모두 체포했다고 기록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⁶¹⁾ 조선의 입장과 청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게 서술된 까닭일 것이다. 이 사례는 조·청 사이의 해금 지역에 관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1700년(숙종 26년) 산둥과 등주인 70여명이 조선의 백령도(白翎島)에서 해삼을 채취하다가 안흥진에 표류하게 된 사건⁶²⁾, 1701년 백령도와 미곶(彌串) 등지에 중국인 표류민이 도달한 사례, 중국의 어선이 조선의 오의포(吾義浦)와 가도, 소청도 등지에서 머물면서 물고기를 잡다가 체포된 후 본국으로 돌아간 사건 등이 수록되었다.⁶³⁾

사례를 종합해 보면 정약용은 바다를 사이에 둔 양국 간의 분쟁이 이전부터 여러 번 있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들은 대개 표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만큼 해상의 침범은 대체로 표류를 명분으로 한 침범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정약용이 표류로 인한 청인의 해상 월경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해도방수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중국 선박이 조선의 공도(空島)인 신도(薪島)⁶⁴⁾ 등에 통상 목적으로 잠입했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여 청인의 해상 월경에 대한 경계의식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중 한 가지 사례인 1803년(순조 3년)에 발생한 청의 성경 지역의 유문희(劉文喜) 등 6인이 신도에 몰래 들어와 나무를 베고 무리를 지어 거주한 사건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⁵⁾ 조선에서는 이 사건을 청의 예부에 알리고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청은 용천부사 최조악 등을 보내 이들을 체포하게 했다.⁶⁶⁾ 조선에서 신도라고 부르

“館志仁祖二十四年 福建人徐勝等過加背梁爲 萬戶景星翼所覺與票捕...二萬戶窺見船中物貨 頓起狼心射死九人勝等...”

61) 『효종실록』, 효종 1년(1649년) 7월 16일

“漢人又乘船販貨於日本, 將泊島嶼, 就便柴、水, 卒遇我國船, 疑我爲南蠻紅毛賊來鬪, 我人遂皆執之”.

62)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9쪽).

63)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8~12쪽).

64) 청나라 사람들은 장자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장자도라는 지명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서 장자도는 조선 사람들이 신도라고 부른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65)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19쪽)

“彙考嘉慶八年 副都統策等札諭曰 盛京高麗溝地方奸民 劉文喜等六人聚集多人偷斫木植...夥黨畏罪逃逸竄至該國障子島地界...”

; 『순조실록』, 순조 3년(1803) 10월 13일 기사 참조.

고 청에서는 장자도로 부르는 이 섬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데 유문희 등이 숨어 살면서 거주지로 삼았다는 점에서 조선의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청인의 조선 영토 침입과 잠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섬은 호칭에서 알 수 있듯 조선과 청의 접경지역이어서 영토의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발생했다.

다음 해인 1804년에는 이양선(異樣船) 3척이 같은 장소인 장자도에서 정박하고 청나라 사람 25명이 섬 안에서 그물을 말리던 중 적발되었다. 이 때 20명은 도망하고 5명만 잡아서 조사했는데 5명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봉황성으로 가던 중 장자도에 머무른 사람으로 판명되었지만⁶⁷⁾ 전년에 몰래 청나라인들이 건너와 숨어 있던 장자도에서 당시 일행이었던 장부안 등이 다시 정박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겨 주었다.⁶⁸⁾

이에 조선 정부의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똑같은 무리들이 무인도인 신도에 계속 들어와 거주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조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잠식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범월인의 일부를 엄히 곤장을 치고 돌려보내고 미긋진 침사를 파직했을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⁶⁹⁾ 그러자 1807년에 신도(薪島), 곧 장자도에 또 다시 청인이 몰래 들어와 잠상(潛商)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신도에 진을 설치하자는 적극적 의견이 생겨났고 정약용도 이를 소개했다. 이 사건은 실록에도 상세하게 실릴 정도로 중대한 범월 사건으로 인식되었음이 틀림없다.

올해 6월 초8일에 김군일과 김철산의 두 척의 배를 빌려 대미(大米) 1백 50석과 소미(小米) 70석을 싣고 몰래 용천부(龍川府) 장자도 지방으로 가서 몰래 짐을 풀고, 중국의 잠월인(潛越人)으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주씨(朱氏)·장씨(張氏) 성을 쓰는 두 사람과 화매(和賣)하고 단목(丹木)·백반(白礬)·부초(浮椒)·유철(鑰鐵)·동전(銅錢)·은자(銀子)·자기(磁器)·유반(鑰盤)·바라(鳴囉)·명라(鳴鑼)·풍

66)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20쪽)

“移咨禮部曰 今此劉文喜等 乘間偷渡聞甚驚駭 則差龍川府使崔朝岳等 帶領軍卒協同 上國兵役約束...”

67)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22쪽)

“嘉慶九年 移咨禮部曰 彌申鎮僉使 李存敬等 爲巡邊察訪騎船出洋見異樣船三隻泊在障子島港口 登岸瞭望有上國人二十五名見在島中構幕晒綱... 五名現帶鳳凰城運木票文便則放回...”

68)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22쪽)

“昨年探匪徒地方自奉上諭尤謹同察 乃張浮安等 構幕晒綱 又在其地合從陸解送仍付憲...”

69) 『순조실록』, 순조 4년(1804) 8월 1일.

경(風磬) 등과 바꾼 뒤, 그 즉시 저자를 떠나 출발하였습니다.⁷⁰⁾

이를 소개하면서 정약용도 신도, 즉 장자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신도라고 부르는데 용천부의 바다 가운데 있어서 1807년부터 진을 설치하여 침절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⁷¹⁾ 실제 신도는 이 사건 이후 진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⁷²⁾ 즉 신도 문제로 인해 조선의 소극적 해금정책이 점차 적극성을 띠게 된 것을 소개한 것이다.

해도방수례는 이처럼 청에서는 장자도라 부르고 조선은 신도라고 부르는 빈 섬에 대한 갈등을 주요 소재로 삼았다. 장자도는 위치의 특성상 조선과 청의 해상 국경을 접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19세기에 들어 갈등이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적떼들은 적발될 때마다 표류를 핑계대며 본국으로 송환되곤 했는데 이는 18세기까지 이어진 조·청 간의 표류민 송환절차를 통해 특별한 법적 조치 없이 송환되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선이 이 섬에 방어진을 갖추는 것으로 문제를 일단락지었지만 범죄자인 유문희, 장부안 등이 계속 사건에 연루되자 조선에서는 범월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정약용도 표류민에 대한 송환절차를 살피기 전에 표류민의 발생 사례와 이를 악용한 사례를 열거하여 해상 범월에 대한 경계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약용의 해상 경계에 대한 인식은 표류를 빙자한 청인의 범월과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정약용이 조선의 영역을 지키는 기본적인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영역관은 『사대고례』의 「강계고」에도 잘 드러나 있어 함께 살펴보면 그 영역관을 짐작할 수 있다.

3. 「강계고」를 통해 본 정약용의 국경 설정에 대한 인식

살펴보았듯이 정약용은 「해방고」의 서문과 사례를 통해 조선과 청은 바다를 마주한 사이로 수많은 표류민과 조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정이 필요

70) 『순조실록』, 순조 7년(1807) 9월 21일.

71) 정약용, 『사대고례』(『다산학단문헌집성』 9권, 25쪽)

“臣謹案 障子島我國稱新島 在龍川府海中 自丁卯始設鎮置僉節制使以守之”.

72) 『순조실록』, 순조 10권, 7년(1807년) 11월 26일.

하고 이는 해방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밝혔다.⁷³⁾ 「해방고」의 표류민 사례는 기본적으로 표류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려는 의도가 바탕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19세기의 바다는 조선이 기존의 해금정책을 고수하기에는 우려할 만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였다. 이에 정약용은 적절한 해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인 해금정책에서 벗어나 조선의 영역 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경계 설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약용의 이러한 경계 인식에 대한 생각은 육지의 접경지역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되었다. 같은 책의 「강계고」에서는 일찍이 청과 조선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백두산 정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의 강역의 경계에 대해 살피고 있어 주목된다.

신이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백두산은 중국에서 장백산이라고 칭하는데 꼭대기에 큰 못이 있어 가히 3~40여리를 두루 흐릅니다. 산세가 웅장하고 그 기반이 빼어나서 양국의 경계로 그 북쪽은 길림의 오라를 삼고 그 남쪽은 우리의 함경도를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길림성은 산의 서북쪽으로 1300여리에 있고 영고탑성은 산의 동북쪽 800여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갑산부는 서남쪽의 수풀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산부는 동남쪽의 삼림에 위치하여 두 개의 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큰 못은 삼백여리를 갖추어 위치한 즉 양국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백두산을) 산해경에서는 불함산이라 칭했고 후한서 동이전에서는 개마산이라 칭했고 후위서의 물길전에서는 도태산이라 칭했습니다. 또 당서 발해전에서는 태백산이라 칭했고 지금 만주의 사람들은 가이라 칭하며 백성과 상인들은 견아린이라 하나 모두 하나의 이름입니다...⁷⁴⁾

여기에서 정약용은 백두산의 천지를 기준으로 조선과 청의 경계가 자연지형으로 설정이 되어 양국 간에 무언의 합의를 이루고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정약용이 이를 강조한 것은 1678년 청의 내대신 오목눌(吳木訥)이 장백산의 경계를 밝히고자 찾아와 그 경계를 재확인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⁷⁵⁾ 이미

73) 정약용, 『다산시문집』, 제15권 「해방고서」

“彼我胥漂，歲至數十，咨報往來，亦多可考，蓋我豐川長淵等地，與山東相直，康津海南等地，與淮南相直，緯度既同，壤地相近，乖迕則侵伐互及，和睦則漂轉胥恤，總係海防事情，今彙次爲海防考。”

74) 정약용, 『사대고례』, 「강계고」(다산학단문헌집성) 8권, 647~648쪽

“臣謹案我國之白頭山中國稱長白山頂有大池周可三四十里 山勢雄盤跨踞兩國之界其北爲吉林烏喇界其南爲我咸鏡道界 而吉林城在山西北一千三百餘里 寧古塔城在山東北八百餘里 我之甲山府在於西南麓茂山府在於東南麓二府距 大池俱爲三百餘里 此卽兩國之所界也 山海經稱不咸山後漢書東夷傳稱蓋馬山後魏書勿吉傳稱徒太山唐書渤海傳稱太白山 今滿洲之人稱歌爾民商堅阿鄰皆一也...”

17세기 말부터 청은 조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민감한 지역이자 청의 민족적 영지이고 발상지인 장백산에 대한 경계선정에 눈을 돌린 사실을 기록하여 조선의 강토 경계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84년에 청은 주방협령(駐防協領) 늑출(勒出)을 보내 산의 형세를 살피고 장백산의 형세를 그림으로 그려 가져갔고⁷⁶⁾ 1712년에는 목극등을 보내고 조선의 관원들로 하여금 안내를 하게 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기에 이르렀다.⁷⁷⁾ 이에 정약용은 “늑초의 사역(그림을 그려 남긴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맞이 하여 끊어서 가로채 상처 입혔으니… 강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연유였다”⁷⁸⁾ 고 하여 청의 경계 설정이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져 산삼 채취 등의 범월로 인한 갈등의 배경과 파장이 청의 영역과 경계 설정에서 이뤄진 것임을 간파하였다. 또한 목극등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기까지의 과정을 청의 기록과 조선의 기록을 비교해 살핀 후 소위 분수령이 생긴 연유와 정계비를 세울 때의 상황을 기록했다. 여기에서도 정약용은 『만기요람』의 기록을 인용해 조선의 경계 선정에 대한 무지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만기요람에서 말하기를 여지도에서 경계를 나눈 강이 토문강의 북쪽에 있는데 강의 이름은 경계를 나눈즉 정계비가 되고 여기에 세운다고 하였다. 또 비문에서 말하기를 동쪽으로 토문을 삼고 역시 토문에 원류에 세우니 아는 자들은 한 사람도 쟁변하지 않고 수백리의 강토를 잃은 것을 한탄한다고 했다.”⁷⁹⁾

이는 『만기요람』의 기록이지만 정약용의 심정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토문강의 원류와 지류를 아는 사람들도 목극등의 부당한 영역 선정에 대해 대응하지 않아 수백리의 강토를 잃은 것을 한탄하는 정약용의 심정을 담고 있다. 정약용은 당대의 영토와 강역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

75) 정약용, 『사대고례』, 「강계고」(다산학단문헌집성) 8권, 644~645쪽
“康熙十七年(肅宗四年 戊午)內大臣吳木訥奉旨 到長白山審其地界”.

76) 정약용, 『사대고례』, 「강계고」(다산학단문헌집성) 8권, 648~649쪽
“康熙二十三年 奉旨遣駐防協領勒出等復周圍相山形勢 廣袤綿互略如一統志所云”.

77) 정약용, 『사대고례』, 「강계고」(다산학단문헌집성) 8권, 649~654쪽.

78) 정약용, 『사대고례』, 「강계고」(다산학단문헌집성) 8권, 649쪽
“臣謹案 駐防協領勒楚奉旨繪畫輿地山川至三道溝 其官役爲我人邀截被傷...此亦所以審明疆界也”.

79) 정약용, 『사대고례』, 「강계고」(다산학단문헌집성) 8권, 654쪽
“萬機要覽云輿地圖分界江在土門江之北 江名分界則定界碑當豎 覩於此 且碑文既曰東爲土門則 亦當豎於土門之源識者歎其無一人爭辨坐失數百里疆土云”.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국경을 마주한 청과 같은 외국에 더 이상의 침탈을 당하고자 하지 않았음을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약용은 해상에서의 영역 갈등에 대해서도 「해방고」를 통해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더 이상의 영역 침탈이 이뤄지지 않도록 표류의 실상 조사와 표류민에 대한 외교적 절차를 다시 정리함으로써 영역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정약용의 『사대고례』와 「해방고」를 통해 당시 증가 추세에 있던 표류민의 발생에 대한 외교적 송환절차를 고심한 정약용의 저술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더 나아가 표류민을 빙자한 조·청 간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는 영역 분쟁의 양상과 이를 방지하고자 한 해방정책의 개선을 주장하는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해방고」와 「강계고」에서 정약용은 뚜렷한 경계설정을 통한 외교적 분쟁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강력한 언급은 없지만 저술의 체제와 구성, 자신의 견해를 수록한 부분에서 강역에 대한 올바른 설정과 강역 상실에 대한 우려를 읽어낼 수 있다.

위의 사실들을 통해 정약용의 경계 인식이 지역과 영토, 민족을 구분하는 근대적인 시각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과 청의 민감한 영역 간 갈등에 대해 정약용은 합리적인 시각에서 영토의 중요성과 외교적 실익에 대한 인식의 면모를 다분히 보여주었다. 정약용의 국방 영토관은 충분히 근대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셈이다.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외교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은 현대인의 시각으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특히 조선의 소극적 해방정책이 주를 이루던 상황에서 점차 바다를 통한 영역 간 갈등과 분쟁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 정약용의 혜안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정약용의 우려는 조·청 관계에 있어 후대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1882년(고종 19) 10월 22일 조·청 수륙무역장정을 맺은 조항에서 그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라 예리한 현실인식임을 반증하는 조문이 등

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와 중국의 산둥(山東)·봉천(奉天) 등 성(省)의 연해지방에서는 양국의 어선들이 내왕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아울러 해안에 올라가 음식물과 식수를 살 수 있으나, 사적으로 화물을 무역할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배와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소재 지방에서 법을 범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곧 해당 지방관이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상무 위원에게 넘겨 제2조에 준하여 처벌한다.

피차의 어선에서 징수하는 어세(魚稅)는 조약을 준행한 지 2년 뒤에 다시 모여 토의하여 작성(酌定)한다. (조사에 의하면 산둥의 어호(漁戶)가 해변의 물고기기가 운선(輪船)에 놀라 대안(對岸) 쪽으로 쏠리자 매년 사사로이 조선 황해도의 대청도(大靑島), 소청도(所靑島)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자들이 한해에 1,000명을 헤아린다.)⁸⁰⁾

수륙무역 장정 중 이 조문은 평안도·황해도 지역은 청의 어민이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조문의 내용은 앞으로 고기를 잡겠다는 의미보다 이미 고기를 잡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의 대청도와 소청도, 즉 1793년 정조가 농민을 이주시켜 개간시킴으로써 적극적 해방정책을 펼치려 했던 곳에서 청의 어선들이 한해에 1,000여명이 영역을 넘어와 조업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정조와 정약용의 우려가 현실화되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정약용이 『사대고례』, 「해방고」를 통해 양국 간의 바다에서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애매한 해안 경계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 한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 정약용의 예언이 빗나가지 않고 정확히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약용의 「해방고」 저술의 배경이 단순한 외교사례의 절차를 정리하고자 한 것에서 나아가 모호한 조선의 국경인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때문에 정약용의 「해방고」와 「강계고」의 저술은 단순한 외교지침서로 국한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시기에 정약용의 선배 학자이자 북학자의 종장인 박지원은 청을 배워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청을 대국으로 보고 명을 상국으로 보는 중화

80) 『고종실록』, 고종 19년(1882년) 10월 17일

“朝鮮平安 黃海道與山東 奉天等省濱海地方, 聽兩國漁船往來捕魚, 竝就岸購買食物牯水, 不得私以貨物貿易, 違者, 船貨入官, 其於所在地方有犯法等事, 卽由該地方官拏交就近商務委員, 按第二條懲辦 至朝鮮黃海道大小靑島捕魚者, 歲以千計...”.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황이었다.⁸¹⁾ 그에 비해 정약용은 청과 조선의 관계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조청 관계를 천자와 제후국의 관계인 조공질서 안에서 바라보지 않고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실익을 따지기 위한 관점으로 바라본 점이 그것이다. 또한 당대의 지식인들도 소중화 혹은 중화주의에 빠져 실리적 외교관계를 자각하지 못할 때 자국의 경계 인식에 있어서 자국의 영역을 지키고 자국민의 이익을 지키고자 『사대고례』를 저술한 정약용의 선각자적인 시각이 더욱 빛을 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1) 김문식, 2005, 「박지원이 파악한 18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한국실학연구』10, 33쪽 참고.

참고문헌

원전류

- 『효종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순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여유당전서』, 『다산시문집』, 『경세유표』, 『목민심서』, 『다산학단문헌집성』, 『사암선생연보』, 『만기요람』, 『속대전』.

도 서

- 정옥자, 1988, 『조선 후기 조선증화사상 연구』, 일지사.
배우성, 1998, 『조선 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이화자, 2008, 『조청 국경문제연구』, 집문당.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논 문

- 임형택, 2008, 『『사대고례』와 정약용의 대청관계 인식』, 『다산학』 12.
정 민, 2009, 「다산의 「해방고」에 나타난 중국 漂船 처리 문제」, 『한국학논집』 45.
정 민, 2008, 「표류선, 청하지 않은 손님」, 『한국한문학연구』 43.
김경춘, 1987, 「조·청 국경문제의 일시점-범월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6.
이강원, 2007, 「조선후기 국경인식에 있어서 豆滿江·土門江·分界江 개념과 그에 대한 검토」, 『정신문화연구』 108.
강석화, 2005, 「조선후기의 북방영토의식」, 『한국사연구』 129.
배우성, 1997, 「17·18세기 청에 대한 인식과 북방영토의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99·100.
배우성, 1999, 「정조시대 동아시아 인식의 새로운 경향」, 『한국학보』 94.
배우성, 2006, 「조선후기 異域인식」, 『조선시대사학보』 36.
배우성, 1998, 「조선 후기 변지관의 변화와 지역민 인식」, 『역사학보』 160.
배우성, 1997, 「조선후기 연해·도서지역에 대한 국가의 인식 변화」, 『도서문화』 15.
김문식, 2003, 「실학과 동아시아 자본주의,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한국실학연구』 8.
김문식, 2005, 「박지원이 파악한 18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한국실학연구』 10.
최성환, 2011, 「19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경험과 그 영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최성환, 2009,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노정과 송환체제」, 『한국민족문화』 43.
민덕기, 2010, 「동아시아 해금정책의 변화와 해양 경계에서의 분쟁」, 『한일관계사연

구』 42.

- 민덕기, 2011, 「중·근세 동아시아의 해금정책과 경계인식」, 『한일관계사연구』 39.
- 신명호, 2006, 「조선후기 해양인식과 표류민 정책」, 『해양문화학』 2.
- 한임선·신명호, 2009, 「조선후기 해양경계와 해금」, 『동북아문화연구』 21.
- 김경옥, 2012, 「18~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 표도민들의 추이」, 『조선시대사학보』 44.
- 김원모, 2004, 「19세기 한영 항해문화교류와 조선의 해금정책」, 『문화사학』 21.
- 원유한, 2000, 「조선후기 대청관계 및 인식의 변화」, 『아세아문화연구』 4.
- 원종민, 2008,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중국학연구』 44.
- 유서풍, 2009, 「근세동아해역의 위장표류사건」, 『한국학논집』 45.

Abstract

Jeong YagYong's Perceptions of Sea Refugees and Maritime borderlines

Shin Jae - Hoon *

Jeong YagYong, who are the *SilHak* Scholar during 18th to 19th century, wrote the *Sadaegore* with his pupil Lee Cheong. This work is the guide of diplomacy, which are asked to write from King Jeongjo. Although this book was completed after King Jeongjo's death, it harbors the King's thoughts about diplomacy or the relationship with China. *Haebanggo*, one chapter of the book, is about marine policy and how to treat the castaways. In this chapter, Jeong YagYong provides various way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in marine area and sea refugee I will examine the Jeong YagYong's thought about the problems and ways to address these problems. Futhermore, I will inquire Jeong's opinion on the boundary in marine area. He recognized that many border transgressions happened in marine area at that time and considered that as urgent political affairs. *Haebanggo* consists of two parts. First part of the book is about protect own island from other countries. The rest part is about cases of dealing with castaways and their transgression. I argue that Jeong YagYong intended to make distinct borderlines in marine area and empathized the necessity of protecting Joseon's islands from other countries.

Key Words: Jeong YagYong, *Haebanggo*, *SilHak*, Maritime area, Maritime borderlines

논문접수: 2015년 3월 13일 | 논문심사: 2015년 4월 3일 | 게재확정: 2015년 4월 7일

* Graduate Student,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